

■ 핀란드 - 정보보호옴부즈만(The Data Protection Ombudsman)

바로가기 ⇒ <http://www.tietosuoja.fi>

메일보내기 ⇒ tietosuoja@om.fi



핀란드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장하고 주거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핀란드 헌법 제10조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자세한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즉, 핀란드는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f 1999)을 통해 핀란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 등의 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정보보호옴부즈만(The Data Protection Ombudsman)은 바로 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핀란드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이다. 또한 정보보호옴부즈만 외에도 정보처리 허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위원회(The Data Protection Board)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1. 정보보호옴부즈만

(1) 옴부즈만의 지위 및 구성

정보보호옴부즈만은 핀란드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집행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불만 사항이나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된 기구이다. 정보보호옴부즈만은 국무회의(Council of State)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 현재 동 조직은 옴부즈만 1인과 부옴부즈만 1인, 약 18여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옴부즈만은 법무부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예산지원도 법무부로부터 받으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2) 관장법률

정보보호옴부즈만은 1999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통신상의프라이버시및정보보안에관한법(Act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in Telecommunication)을 관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987년 개인정보파일법(The Personal Data File Act of 1987)을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2000년 개정된 바 있다.

(3) 업무범위

정보보호옴부즈만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다. 단, 여기에서의 개인정보는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만을 의

미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옴브즈만은 동법에 따라 순수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私人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언론보도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언론기관의 보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국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는다.

(4) 주요기능

옴브즈만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만사항이나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해주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에 대하여 법규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거나 정책자문을 행하는 등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정보보호옴브즈만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옴브즈만의 주요기능>

기능	주요내용
일반적 정보제공	개인정보처리등록유지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법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문
행동규약 제정을 위한 지침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등록유지 및 올바른 정보처리관행의 확립 등을 위해 자율적인 행동규약(Code of Practice)을 마련할 때, 옴브즈만은 행동규약의 편찬에 대하여 상담 및 지침 제공 또는 심사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관리자 및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및 결정 · 법준수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결정 ·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에 대한 옴브즈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항소의 대상이 됨 · 옴브즈만이 제공하는 지침이나 조언 등의 방법이 문제되는 상황 해결이나 구제에 실패하는 때에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호 위원회에 이첩시킬 수 있음
정부, 검찰, 법원에 대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준비과정 및 입법심사에 있어서 참여 또는 평가 · 행정부의 개인정보처리업무 개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 검사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기 이전, 반드시 옴브즈만과 상의해야 함 · 법원도 옴브즈만에게 개인정보 관련 사건에 대해 청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감독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의 개인정보관리자의 고지의무에 따라 감독권 수행 · 개인정보관리자의 정보처리에 관한 법 준수, 지도, 사전예방, 제도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조사 수행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Tietosuoja라는 잡지 연 4회 발간) · 웹사이트 관리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의 등 교육행사
국내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주체·정보처리자와의 협력 · EU national Data Protection Ombudsmen 등에 참가하는 등 국제협력 수행

2. 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는 1988년 설립된 기구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정보처리를 허가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또한, 옴브즈만이 이첩한 사건을 접수받아 심사하며 주로 심각하고 중대한 법위반사건에 대해 판단한다. 위원회는 옴브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을 기반으로 제정된 규칙이나 명령상의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명령이나 불법행위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를 구제토록 배상명령을 내리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처리자의 정보처리를 금지토록 하는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절차법(The Administrative Judicial Procedure Act)에 따라 항소의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기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개인정보처리등록업무에 능숙한 자로 임명된다. 위원은 국무회의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